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33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9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91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1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6

○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공고 제2020-24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22

회 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89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위반 과징금 체납자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및 같은 법 제33조(압류)에 의거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건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과징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최고) 및 같은법 제33조(압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0.04.07. ~ 2020.04.21.(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징금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18층)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8층 산업진흥과

○ 문의 전화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99 및 032-440-4277)

붙임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대상

연번	부과연도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단속대상	과징금 및 과태료	발생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반송사유	비고
1	2017	000001003	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	주유기	149,530,000	2015.3.13	인천 부평구 십정동 ***주유소	계량기(주유기) 조작	폐문부재	계량에 관한 법률
2	2014	000010003	백**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일신공업사	4,956,000	2014.7.28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	공장처분 사전신고 미이행	폐문부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91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주관 부서
2020-0-인천광역시-16	사회단체 대한교육복지문화협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65번길 7, 1층(효성동)	이 순 호	○ 평생교육전문가 양성 ○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2020.4.6.	교육협력 담당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1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인가고시 제2019-147(2019.07.01)호로 고시된 『인천가족공원(3-1단계)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의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이 불가능한 연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고명: 인천가족공원(3-1단계) 수용재결에 따른 분묘 개장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9조
3. 공고기간: 2020.4.7.~2020.4.22.(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매장자	연고자	대집행 방법
1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산54-10번지(인천가족공원 내)	분묘(나3-371), 비석	김**	김*수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2	〃	분묘(나3-774), 비석	이**	이*근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3	〃	분묘(나7-148), 비석	오**	오*섭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4	〃	분묘(나1-284), 비석	밀양손씨	이*옥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5	〃	분묘(나1-384), 비석, 꽃병, 노간주나무	김**	강*규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6	〃	분묘(나1-495), 석축, 향나무, 사철나무	김해김씨	최*식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7	〃	분묘(나2-247), 비석, 상석	김해김씨	김*덕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8	〃	분묘(가12-85), 비석	빈센트****	주*덕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9	〃	분묘(나2-366), 비석	호**	호*부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10	〃	분묘(나4-1289), 비석	이**, 성산채씨	최*연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11	〃	분묘(나4-1315), 비석, 석축	김**	김*내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12	〃	분묘(나4-1308), 비석, 상석, 석축2, 돌받침, 회양목, 측백나무	최**	최*득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13	〃	분묘(나10-613), 비석, 상석	박**	박*순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14	〃	분묘(나6-329)	송**	송*석	직접집행 또는 제3자 집행

5. 송달할 서류의 종류: 행정대집행 영장(별첨)

6. 공고 및 게시장소: 인천광역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구청 게시판

7.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분묘를 자진 이장(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의거 귀하에게 징수하겠습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032-440-5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19-수용1차-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김*수**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길 **(**동) ***호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1차-2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3-371, 매장자: 김**)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1차-8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이*근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로 **(***아파트) *-***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1차-8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3-774, 매장자: 이**)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1차-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오*섭**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 ***동 ***호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1차-7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7-148, 매장자: 오**)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2차-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이*옥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번길 **-**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2차-51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1-284, 매장자: 밀양손씨)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2차-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강*규**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동)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2차-2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1-384, 매장자: 김**)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2차-6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최*식**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길 ** ******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2차-63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1-495, 매장자: 김해김씨)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2차-6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주*덕** 귀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읍 ** **길 **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2차-60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가12-85, 매장자: 빈센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2차-6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호*부**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번길 **, ***호(*****)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2차-67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2-366, 매장자: 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2차-1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김*내**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 ***동 ****호(****아파트)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2차-11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4-1315, 매장자: 김**)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2차-2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박*순**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번길 **-*(**동)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2차-23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10-613, 매장자: 박**)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2차-29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송*석**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로***번*길 *

2019년 12월 6일과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2차-29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6-329, 매장자: 송**)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3차-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김*덕**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번길 **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3차-2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2-247, 매장자: 김해김씨)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3차-2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최*연**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로 **-*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3차-21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4-1289, 매장자: 이**,성산채씨)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제2019-수용3차-2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최*독**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2020년 1월 7일, 제2019-수용3차-22호로 귀하 소유의 분묘(나4-1308, 매장자: 최**)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장(이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고, 2020년 1월 22일, 제2020-198호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공고 만료일 이후 기간 중 1일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추후 산정

2020년 4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공고 제2020-24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제83조 등을 위반한 연희공원 내 무단점유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4. 7.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공 원 사 업 소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4. 7. ~ 2020. 4. 21.
3. 공시송달 대상:
   ○ 대상자: 한*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9길 69-**, 개봉동)
   ○ 대집행장소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48-16번지(연희공원 내)	호이스트 및 패널, 철제 등	2,730㎡	제3자 집행

4. 공고방법: 인천광역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5. 지시 및 고시사항
○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458-71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